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03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규정심의위원회), 02-970-6108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7. 7. 7.

개정 2020. 2. 12.

개정 2021. 3. 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심의하기 위한 규정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교무회의에 상정하는 각종 규정을 사전에 심의한다

- 1. 교내 모든 규정 간의 통일성
- 2. 교육관계법령과 규정과의 상충여부
- 3. 규정으로서의 체제
- 4. 규정 용어의 개선 및 정비
- 5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사무국장, 교무과장, 학생지원과장,

- 기획평가과장, 총무과장, 교육혁신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총무팀장이되다.
- 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본교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 - ③ 회의소집이 여의치 못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때에도 제2항에 따른다.
- 제6조(안건제출 및 의견청취) ① 해당부서에서 입안된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(개정 2017. 7. 7.)
 - ② 규정안을 제출한 해당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해당부서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구비요건) 심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규정의 종류
 - 2. 다른 부서와의 협조 또는 합의

- 3.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신·구조문대조표
- 4. 현행 상태의 문제점이나 제정(개정)의 취지
- 5. 시행예정 희망일자
- 6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- 제8조(반려) 제7조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, 위원회에서 반려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부서로 되돌려 보낸다.
- 제9조(회의소집) 제5조에 따른 회의소집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신, 공고 등의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10조(소집기일) 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예정일로부터 최소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심의 시에도 같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.
- 제11조(소집목적 등의 명시) 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
 - 1. 회의소집 일시와 장소
 - 2. 회의소집 목적과 심의안건
 - 3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- 제12조(서면심의)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서면심의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 재적위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요청한 경우 위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정기한 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자료배부) 위원회 회의시간의 단축과 충분한 심의 검토의 여유를 갖기 위하여 심의 요청된 규정안은 회의소집을 통지할 때와 서면심의를 요구

할 때에 배부한다.

제14조(회의록) ①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.

- 1.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
- 2. 회의개최 정족수 여부
- 3. 토의안건과 심의결과
- 4. 폐회시간 및 참석자 서명
- 5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-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.

제15조(결과통보)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심의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제16조(비치서류) 위원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놓는다.

- 1. 심의요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
- 2. 회의록
- 3. 위원회 활동에 관한 기록
- 4. 그 밖의 필요한 서류

제1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(제39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92호, 2017. 7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14호, 2020. 2. 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03호, 2021. 3. 2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 (제6조 제1항 관련)

				접수닉	년월일				
규 정	심으	비요	청 서	접수	·번호				
				시행예?	정희망일				
제	목								
零	류								
협조 또는	합의	해당부서							
개	<u>\$</u>								
현행시의 점 또는 <i>저</i> 정)의 취지									
7]	타								
서울과학기				규정 제6조	에 의거 유	위와	같이	심의	요청
첨부: 심의인	난건 초 약	안 또는 개	정안 및 선	· 구조문	대비표 9투	<u>1</u>			
						20	년	월	일
				요청부서]장				(인)
규정심의	비위원	· 보회위원	실장 귀	하					

[별지 제2호] (제8조 관련)

반려사유서						
수 신		처리번호				
제 목		접수번호				

귀 부서에서 심의 요청한 상기의 내용을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반려하오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.

200 년 월 일

반려사유

첨부: 심의안건 초안 또는 개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9부

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(인)

[별지 제3호] (제9조 관련)

규심위	호
	규정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
소집일시	
소집장소	
소집안건	
소집목적	

규정심의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소집함.

20 년 월 일

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 (인)

위원 귀하

첨부: 심의안건 초안 또는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부

[별지 제4호] (제12조 관련)

서면심의 요구서						
제 목		시행예정일				
요청부서		응신기한				
서면심의						
사 유						

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상기 사항을 서면 심의코자 요구하오니 심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심의안건 초안 또는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부

20 년 월 일

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 (인)

위원 귀하